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1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양 · 이달희 · 서천호  
고동진 · 정희용 · 안상훈  
김성원 · 박덕흠 · 강대식  
한기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신체상·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

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마. 그 밖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업

제9조제1항제1호 중 “숙박을”을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숙박업에 한정한다)의 영업장 및 숙박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영업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① ----- -----.</p> <p>1. ----- ----- -----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p> <p>가. 「<u>식품위생법</u>」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u>식품접객업 및 공유주방 운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u></p> <p>나. 「<u>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u>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u></p> <p>다. 「<u>학원의 설립·운영 및</u></p>

<신 설>

<신 설>

2. ~ 6. (생 략)

② (생 략)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마. 그 밖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① -----  
-----  
-----  
-----  
-----  
-----  
-----  
-----  
-----  
-----

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  
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생략)

② ~ ⑥ (생략)

-----  
-----  
-----.

1.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숙박업에 한정  
한다)의 영업장 및 숙박을-----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